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3년 10월 6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7일
- 다. 상정일자 : 2003년 10월 20일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관리국장 이장길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·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연계·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이 기존 6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동 조례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·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의 업무 연계·협조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
-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두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9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 이유

- 「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」의 효율적 추진과 「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·지방분권업무혁신팀」과의 연계·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「지방교육행정혁신 관리팀」 설치·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기존 6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9명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3조).
-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(안 부칙 제2조).

□ 개정 근거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
- 「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」 운영 관련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 [교육인적자원부 지교 81413-561 ('03.8.26)]

□ 개정조례안 : 불 입

□ 참고 사항

- 신·구조문 대조표 : 불 입
-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 : 불 입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불 입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한시정원은 6명”을 “한시정원은 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의 유효기간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□ 참고 사항

I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한시정원)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6명 으로 하며,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한시정원) 한시정원은 9명</p>

II.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 요약서

<p>목 표</p>	<p>학교·교실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- 自生的 活力(Vitality)을 통한 현장으로부터의 교육개혁 추진</p>		
<p>추진방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한 자율운영 체제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·지침 정비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·위임과제 발굴 -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지원과제 발굴 ▶ 학교·교실 중심의 개혁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시스템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→지역교육청→시·도교육청→교육부 순으로 상향식 조직진단 - 교육행정기관의 기능·조직개편,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 ※ 교육부: 정책개발 평가 감사/시·도: 기획기능/지역청: 학교지원 기능 ▶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기구·인력 적정규모 모색 		
<p>추진전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연구기관·대학·컨설팅기관 등으로 "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연구 컨소시움" 구성 ●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조 ● 법령·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기관의 준비도 및 수용능력 제고로 혁신 추진력 극대화 		
<p>단계별 추진계획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288 987 401 1089"> <p>1 단계 (03.7~04.5)</p> </td> <td data-bbox="422 987 970 1089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·조직 진단 연구 컨소시움 구성 및 진단 실시 -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</td> </tr> </table>	<p>1 단계 (03.7~04.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·조직 진단 연구 컨소시움 구성 및 진단 실시 -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마련
<p>1 단계 (03.7~04.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능·조직 진단 연구 컨소시움 구성 및 진단 실시 -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		
<p>2 단계 (04.6~05.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제·지침 정비 및 권한의 이양·위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- 학교·교육행정기관의 기능·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시·도 조례 등 개정 추진 - 학교·교육행정기관의 기능·조직개편 준비 ※ '05.3.1 시행 계획 		

Ⅲ. 관계법령 발췌서

○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대통령령 제19516호)

제17조(한시정원)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교육감은 총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.

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○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(교육인적자원부령 제25호)

제2조(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)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이하 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·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
2. 총 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
3.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
4. 1인당 업무량 산출표
5.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
6. 사무실 확보·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 계획서

②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

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